

## 제 7 장 계 산

### 제43조 (사업년도)

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# 제44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등)

① 대표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거쳐 정기주주총회의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 3. 17., 2003. 10. 21., 2012. 3. 23., 2020. 3. 31.>

1. 대차대조표

2. 손익계산서

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<개정 2012. 3. 23.>

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. <신설 2012. 3. 23.>

③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 3. 17. , 2003. 10. 21. , 본항 이동 2012. 3. 23.>  
<개정 2020. 3. 31.>

④ 회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 <본항 이동 2012. 3. 23.>

⑤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 <본항 이동 2012. 3. 23.>

⑥ 회사가 외국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거래되도록 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회사는 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태와 관련된 정보의 준비, 제출, 제공에 대한 관계 감독기관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 <신설 1999. 10. 1., 본항 이동 2012. 3. 23.>

#### 제45조 (이익금의 처분)

이 회사의 매사업년도 이익금(이월이익잉여금 포함)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1. 이익준비금
2. 기타의 법정적립금
3. 임의적립금
4. 배당금
5.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
6. 차기이월이익잉여금

#### 제46조 (이익배당)

-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.
-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
- ④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,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된다.
- ⑤ 이 회사는 시내전화 사업개시후 당해사업년도의 이월결손금이 전액 보전되는 사업년도부터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46조의2 (중 간 배 당) <신설 2023. 3. 30.>

-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,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, 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③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.
- ④ 제1항에 의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제5항 및 제4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⑤ 제1항에 의해 이 회사가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하는 경우 이 회사는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.